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64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이기현 · 박해철 · 이수진

장종태 · 김주영 · 김영환

김 윤 · 김병기 · 한준호

박홍근 · 윤종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는데, 24.12.03. 개정을 통하여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음.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

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제2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 (생략)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 라. (생략) <u><신 설></u>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u>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에 따른 <u>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u> ③ ~ ⑦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